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7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교육청에는 교직원단체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공무직노동조합도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교직원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나.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기관을 '교직원단체'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직원단체'로 변경(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7]
- 「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
과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0. 2. 21. ~ 3. 12.) 결과 요약서 : [별첨 3]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 [별첨 6]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 현황 : [별첨 8]
- 2020년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 [별첨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을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하는”을 “따라 조직된”으로,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라 설립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제4조제2호 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5조 중 “보조금의”를 “지방보조금의”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원단체”를 각각 “교직원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u> <u>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u>따라 교직원단체</u>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u>조례</u>에서 “<u>교직원단체</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p> <p>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u>해당하는</u>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u>제4조</u>의 교원노동조합</p> <p><신 설></p> <p><신 설></p> <p>2. (생략)</p>			<p><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u> <u>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u>----- -----.</p> <p>제2조(정의) --- <u>조례</u>에서 “<u>교직원단체</u>”란 ----- -----.</p> <p>1. ----- --- <u>따라 조직된</u> ----- ----- ----- <u>제4조</u>에 <u>따라 설립된</u> -----</p> <p>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u>제5조</u>에 <u>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u></p> <p>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u>제10조</u>에 <u>따라 설립된 노동조합</u></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생략)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책무) -----
----- 교직원
단체 -----

-----.

제4조(지원대상사업의 범위) ----

-- 교직원단체-----

-----.

1. (현행과 같음)
2. 교직원-----

3. (현행과 같음)

제5조(준용) -----
--- 지방보조금의 -----

-----.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노사협력담당관 최명현 주무관(02-3999-073)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 당 없 음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 담당	감사관	교육행정6급	이지은
입안 주관부서	노사협력담당관	통보일	2020. 3. 2.

관련 조문	검토결과	조치 사항
조례명, 제1조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 개정은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원단체만 지원해 오던 지방보조금을 지원대상 범위를 교직원 노동조합 및 단체까지 확대하여 교직원단체와 여타 노동조합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타당함 - 지원대상사업의 범위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직원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현재 동 조례와 유사한 보조금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12개의 타시도 교육청 중 8개도의 교육청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규정·시행하고 있어 대상사업 추가로 인한 별도의 부패유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추진 시 특혜발생, 재량권 일탈·남용 및 재정누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 한편 2020. 1.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누수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 사업 시 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p>⇒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p>	“원안 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0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노사협력담당관		
	담당자명	최명현	전화번호	02-399-907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39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02월 2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02월 25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20년 3월 10일</p>				

【별첨 6】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노사협력담당관	담당자	성 명 : 최명현 직 급 : 주무관 연락처 : 02-3999-073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해당조항	검토결과		검토결과
제1조 ~ 제5조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을 교직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별첨 7】

관 계 법 규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0.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2020. 1.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첨 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 현황

2020. 4월 현재

구 분		노 동 조 합 명	비 고
교직 단체 (5)	교원단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노조	서울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공무원노조 (7)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서울시교육청지부		
교육공무직노조 (5)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별첨 9】

2020년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1	서울특별시교원단체 총연합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	30,000	
2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20,000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학생의날 기념사업	20,000	
4		어린이날 기념사업	20,000	
5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장애아동캠프	17,300	
6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다문화가정 한국역사문화체험	9,000	
7	서울교사노동조합	불어라 책바람	20,000	
8		평화통일교육 수업지원	15,000	
계			151,300	